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37

발의연월일: 2022. 9. 1.

발 의 자: 박성중·강기윤·하영제

김영식 • 배준영 • 허은아

홍석준 • 박 진 • 유한홍

태영호 · 서일준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소 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등의 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법률 제 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프로세스"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을 "및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그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	
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	
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	<u>দুর</u>
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프로
할 수 있다. < <u>후단 신설></u>	<u>세스</u>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
	질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그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연장할 수 있
	<u>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6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절차 <u>등</u>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u>효기간 등</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